

# 러시아 혁명과 아키비스트, 1917-1920\*

Russian Revolution and Archivists, 1917-1920

방일권 (Il-Kwon Bang)\*\*

##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3.1 가중된 어려움              |
| 2. 혁명간기                      | 3.2 권력과 아키비스트            |
| 2.1 러시아 기록관리의 부정부적 상태        | 3.3 1918년 6월 1일 법령이 준비되다 |
| 2.2 러시아 기록관리종사자동맹<br>(라드 동맹) | 3.4 법안: 소련 기록학의 권리선언?    |
| 3. 1918년 6월 법령의 탄생과 아키비스트    | 4. 맺음말<br><참고문헌>         |

## 〈국문초록〉

1918년 6월 1일의 '소련 기록관리 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화에 관한 레닌의 법령은 소련 뿐 아니라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기록관리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제도적, 개념적 기초로 평가되고 있다. 기록관리의 사회주의적 제도 구축에 있어 동 법안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러시아 기록관리사의 '향방표지'를 세우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던 인물들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본 연구는 1917-20년간의 혁명적인 상황 아래서 법안을 만드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러시아 기록관리종사자동맹(라드 동맹)의 활동과 그 성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록유산을 보존해야 한다는 시급한 과제 앞에 '라드 동맹'의 활동가들은 1917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임시정부 및 소비에트 정부와 자발적으로 협력함으로써 자신들의 활동을 본격화하였다. 더 나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그들은 소위 국가기록폰드라고 일컬어지는 중앙화된 국가적 기록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록물의 정리와 중앙집중화를 이루는 바탕이 되었으며, 이들의 경험과 성과는 1918년 법령의 조항들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났다.

요어 : 러시아 혁명, 1918년 기록관리 법령, 러시아 아키비스트, 러시아 기록관리종사자동맹

## 〈ABSTRACT〉

Lenin's decree of 1 June 1918 'On the reorganization and centralization of archives in the RSFRS' is appreciated as an institutional and conceptual basis for Socialist archival theory and practice not only in USSR but also in most countries of the socialist community. In spite of its importance to the making

\* 이 논문은 2003년도 한국기록관리학회 추계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한국의국어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ilia-bang@hanmail.net)

논문접수일자 2004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04년 5월 30일

socialist system of archival management,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people, who took a key role to build the 'landmark' in the history of russian archives. This paper focuses on the activities and achievements of archivists in 'RAD Union(Union of Russian archives activists)' in revolutionary situation of 1917-1920.

To preserve documental heritage with historical values in difficult situation of 1917 historians and archivists in 'RAD Union' voluntarily cooperated with new governments. This special situation led them to make more efforts at reformulating national archival system, namely, the state Archival Fond (*Gosudarstvennyi Arkhivnyi Fond*) as a new base for the centralization and arrangement of all archival materials throughout the country. Their experience was reflected in every articles of the archival decree of June 1918.

key words : Russian revolution, Archival decree of June 1918, Russian archivists, Union of Russian archives activists

## 1. 머리말

기록물의 정리 뿐 아니라 각국의 기록관리 제도를 논할 때에 있어서도 역사적 접근법은 주요한 방법론이다. 이제 우리 기록학계에서도 각국의 특수성이나 역사적 상황과 별개로 기술적, 방법론적인 접근을 시도할 경우 외국의 기록관리 제도가 갖는 특성과 장점의 근거가 되는 맥락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상식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개별 국가의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역사적 접근법은 그 제도 생성의 배경과 맥락을 부각시킴으로써 새로운 제도의 정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현재의 우리에게 시대와 상황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참조점을 제공해줄 수 있게 된다.

혁명 직후의 소련 기록관리의 역사에 초점을 두고 있는 본 글은 20세기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록관리에 첫 모델이 되었던 소련의 기록관리제도에 대한 우리 기록관리 연구자들의 낯설음을 얼마간이나마 경감시켜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러시아와 한국의 긴밀한 역사적 연관성으로 촉발된 우리 학계의 관심과 러시아 기록관리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연구자들에게 언어적 장벽과 더불어 소련 시대에 확립된 기록보존의 역사적 전통과 현실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현실적 장애로 자리하고 있다.

최근까지 국내 학계에 소개된 러시아 기록보존 관련 연구로 1990년대 전환기 기록보존소 현황에 관한 연구와 기록보존업무 전반을 다루고 있는 두 편의 글과, 역사기록물을 중심으로 분류체계의 발전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편의 글이 있다.<sup>1)</sup> 두 연구자의 글들은 한국 기록관리학계에 러시아 기록보존 업무를 처음으로 소개한다는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니고 있으

나 독자가 기록물 운영의 전반적 체계가 어떤 계기들을 통해 구축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고 있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본 글은 일견 극히 상식적인 질문들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어떠한 역사적 상황과 조건 속에서 소련 기록관리 체계의 최초의 기반들이 놓였는가? 그 사업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그들의 활동은 어떤 과정을 거치며 수행되었는가? 또 이들의 활동 과정에서 성취된 이론적 방법론적 성과들은 무엇인가?

이같은 질문은 외국 기록관리 연구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연구자에게는 기록관리의 거의 전 부문을 살펴야 하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된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연구의 시간적 범위를 1917-20년의 짧은 기간으로 한정함과 더불어, 소련 기록관제도의 형성에 있어 결정적인 역사적 계기로서 가장 먼저 기억되는 1918년 6월 1일의 '소련 기록관리 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화에 관한 법령'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소비에트 정부의 기록보존소 건설업무에 있어 역사적인 항방표지'가 된 이 법안으로 '소련 기록관 업무의 사회주의적 조직에 정치적, 조직적 기초가 놓여졌다'는 구소련 시절의 공식적인 평가<sup>2)</sup>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소비에트 정권이 채 정비되기도 전에 발표된 동 법안은 우리에게도 당의 주도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불러일으킬 만하다.

물론 정권 성립 직후의 어려운 상황에서 기록관리 부문에 주의를 기울였던 공산당의 역할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1918년 법령이 갖는 역사적 비중을 평가하는 것 뿐 아니라 이 법안의 제정에 숨어있는 당시 구시대 러시아 아키비스트들의 적극적인 관여와 노력을 살펴보는 일이 보다 흥미롭고 의미있는 과제임이 분명하다.

1990년 이후 러시아 역사학계와 기록관리학계에서도 유사한 관심이 일어났다. 소련의 해체와 체제이행이라는 90년대의 대변혁에 직면한 러시아의 역사학계와 기록학계가 자신들의 역사적 뿌리를 더듬는 방법으로서 당대의 역사적 기록들을 발굴하고 재발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sup>3)</sup> 본고는 이들 관련 자료를 기초로 구정권 하에서 일했던

1) 조호연, 「전환기의 러시아 기록보존소」, 『기록보존』 제 9호, 1996; 「러시아의 기록보존제도」, 『역사비평』, 1997, 36호; 방일권,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기록학연구』 제 7호, 2003.

2)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6, с. 15.

3) 주요한 연구로 Автократов В.Н. Из истори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1917-1918 гг.) // О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1993, №. 3. с. 9-34; №. 4. с. 3-27 및 Седельников В.О. ЧК и архивы: Два эпизода из истор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ервые год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 Звенья. Исторический альманах. Вып. 1. М., 1991. с. 439-450 등을 들 수 있다.

아키비스트들의 역할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소련 정권 성립 초기의 기록관리계가 처한 상황 속에서 1918년 6월의 법령이 탄생된 과정을 소개하려 한다. 이를 통해 소련식 기록관리에서 연상되는 바 국가의 강력한 통제와 중앙집중식의 간섭이 1917년을 전후한 역사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과, 1918년 법령에 녹아 있는 당대 아키비스트들의 노력과 관심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 2. 혁명 간기 (1917. 2-10)

### 2.1 러시아 기록관리의 무정부적 상태

소련 이전 시기 러시아의 기록보존 업무는 그 역사의 시작인 키예프 루시 시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기록관(архив 아르히브)이라는 말이 통용된 것은 18세기 이후의 일이었다. 19세기 이후에는 다양한 기관 소속의 기록보존소들이 운영될 뿐 아니라 기록관리의 각 영역들에 대한 활발한 이론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전문 학술교육기관이 설립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이 목도되었다.<sup>4)</sup>

19세기 제정러시아에서 기록물의 보관과 관리상의 통일된 원칙을 수립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치를 수행하고 동시에 '정부가 고수해 나갈 원칙을 잊지 않도록' 하는 기록보존의 원목적 실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일찍이 1820년에 로젠캄프(Г. А. Розенкампф) 남작은 각 정부 부처별로 관리되는 기록관 업무를 통일된 원칙 아래 수행할 뿐 아니라 단일한 국립 기록관 체제를 설립하여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역설하고, 이를 위한 전문요원을 양성할 교육기관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sup>5)</sup> 기록관리 업무의 개혁에 관한 로젠캄프의 견해는 제정러시아 기록관리 이론의 기초를 놓은 칼라초프(Н.В. Калачев)와, 사모크바소프(Д.Я. Самоквасов)에게 전승되어 1905년을 전후한 시기에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의 구체적인 요구들이 제기되었으며, 1911년에는 황제 니콜라이 2세의 관심을 받는데 성공함으로써 러시아 기록관리 업무의 개선안 마련이 구체화되는 듯 하였다.<sup>6)</sup>

4) 혁명 이전기 러시아 기록보존제도의 전반적 발전은 조호연, 「러시아의 기록보존제도」, 『역사비평』, 1997, 36호, 118을, 18세기 이후의 발전 과정은 방일권,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기록학연구』, 2003, 제 7호, 87-93을 참조.

5) Самошенко В.Н. Истор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М., 1989. с. 90.

하지만 기록관리 종사자들의 요구는 정부 각 부서내의 원로 위정자들과 관료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는데 까지 진전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아키비스트들은 1914년 5월에 주 기록관 대표자 대회를 개최하여 이에 항의하면서 급진적인 개혁 프로그램의 실행과 법안의 추진을 촉구하였으나 그들의 요구는 곧 이은 세계 제 1차 대전의 발발로 정부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전쟁이 종결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터진 1917년 2월 혁명과 더불어 제정러시아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불가항력적인 상황 속에서 당시 수도였던 페트로그라드에서는 1917년 3월 첫날부터 구 정권 관련 기록들의 대규모적인 반출과 은폐 및 파기가 목도되었다. 이후의 조사에 따르면 이 시기에 특히 헌병대인 제 3부, 황제원부, 경찰 및 법무 관련 자료와 지방 행정의 최고단 위인 주지사 통치 관련 기록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다.<sup>7)</sup> 제헌의회의 소집까지만 권력을 행사한다는 뜻에서 임시정부로 불린 과도적인 당시의 정부는 현실적 권력으로 작용했던 소비에트와 같등하며 어렵게 국가를 이끌어야 했고, 그 결과 겨우 5월에야 법안에 기초한 4개의 정부부서들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적어도 약 두 달 이상 구 체제의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았던 것이며, 이 시기에 이른 바 '죽쇄 같은 기록들'에 대한 적개심이 표현되었다.<sup>8)</sup>

2월 혁명 이후의 무정부 상태와 방불한 날들이 지나가는 가운데에도 전반적으로 러시아 국민들은 놀랄 정도의 조직력을 보여주며 자신들의 이익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지킬 수 있도록 '자조'조직을 양산해 내었다. 수도의 지식인들도 역사적 유산의 보호를 호소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3월 4일에 작가 고리키의 집에서는 당대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화계 인사들의 회합이 있었다.<sup>9)</sup> 이들은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를 방문한 후, 시민들에게 "옛 주인은 사라졌고... 엄청난 유산이 남았습니다. 이제 그것은 민의 것입니다... 돌 하나, 종이쪽지 하나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 모두가 당신들의 역사요 자랑입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였다.<sup>10)</sup>

6) Хорхордина Т.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е гг. М., 1994. с. 8.

7) Максаков В.В. Архив революции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XIX и XX вв. // *Архивное дело*. 1927. Вып. VIII. с. 29

8) 임정의 새로운 관리들 역시 전반적으로 옛 기록물에 대한 보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14

9) 작가 고리키를 비롯하여, 미술가이자 예술평론가인 베누아, 유명한 성악가 샬라핀 등이 이 회합에 참석하였다.

10) 소위 '고리키 그룹'의 호소문은 1917년 3월 8일자 페트로그라드 소비에트 노동자 대표회의 소식지에 실렸다. Жуков Ю.М. Становление и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ветских органов охраны памятников истории и кул

역사가와 아키비스트들이야말로 기록이 손상되는 당시 상황에 누구보다 민감했다. 말할 것도 없이 당시로서 가장 절박한 과제는, 역사가이자 아키비스트였던 프레스냐코프(А.Е. Пресняков)의 회고대로, “큰 국가적 사업에 관한 가능한 모든 것을 모으고 보존하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sup>11)</sup>

아키비스트로서 이 일에 먼저 행동으로 나선 인물들이 흥미롭게도 모두 해군 장교단에서 나타났다. 해군부 기록보존소 책임자였던 레베데프(А.И. Лебедев)는 3월 1일에 ‘역사를 알아야 위대한 민족’이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의 수장고로서 기록관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자신이 아는 아키비스트들에게 보내 함께 모여 의논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 모임은 3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회합에서는 ‘구정권에서 활동한 주요 인물들의 행적과 그 흔적들을 국가의 재산으로 삼을 것’과, 기록보존소 업무를 주관할 중앙 국립 기록 펀드의 설립을 새 정부에 요구하는 문제가 논의되기로 예정되었다.<sup>12)</sup> 또 한사람의 아키비스트 니네베(Ф.А. Нинева)는 3월 18일에 “우리의 정치, 경제, 정신생활에서 역사야말로 신구약성서가 되어야 한다”면서 기록관을 박물관 및 도서관과 함께 정부가 지원하여야 하며, 특히 군대 기록관과 정부기관 기록관들의 중앙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한 개인적 서신을 임시정부와 국가 두마에 발송하였다. 그는 기록관과 그 업무의 중앙집중화는 영국과 프랑스를 예로 삼을 수 있다고 밝히면서, 프랑스의 기록관리전문가 양성 학교를 소상히 언급하기도 하였다.<sup>13)</sup>

이처럼 레베데프와 니네베의 시도는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으나 그들 모두의 구상에서 기록관 및 그 소장기록물의 국유화가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었다. 국유화 혹은 중앙 집중식 관리는 사라질 위험에 처한 기록들의 보존을 위해 필연적인 과제로 인정되었으며, 이같은 방향의 기록관 체제의 개혁은 전 러시아에 대한 재조직의 일부로 여겨지고 있었다. 이렇게 개인적 발의를 통해서나마 자신의 역사적 기반을 혼란에서 구하려는 책임감 있는 아키비스트들의 목소리가 일정한 방향성을 갖기 시작했다는 점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실제로 레베데프가 제안한 3월 18일의 회합은 보다 발전된 조직으로서 ‘러시아

---

ьтуры, 1917-1920 гг. М., 1989. с. 284.

11) Пресняков А.Е. Реформ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 *Рус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1918. Кн. 5. с. 206-207.

12) Автократов В.Н. *위글*. No. 3. с. 11.

13) 니네베의 서한은 ГАРФ(러시아연방 국립기록보존소)의 밀류코프 펀드(фонд 579)에 보존되고 있다.(Оп. 1. Д. 2744. Л. 1-6).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16-17에서 재인용.

기록관리종사자동맹'(Союз российских архивных деятелей-이하 '라드 동맹 Союз РАД')의 공식적 출발이라는 큰 결실로 이어졌다.

## 2.2 러시아 기록관리종사자동맹(라드 동맹)

라드 동맹에는 당시 러시아의 가장 큰 기록보존소 관계자들과 저명한 역사학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원로원 기록 감찰관 블리노프(И.А. Блинов), 국립 및 페트로그라드 외무 기록관 소장인 골리친(Н.В. Голицын) 공, 해군부 기록관 책임자 레베데프, 교육부 기록관 국장 니콜라예프(А.С. Николаев), 신성종무원 기록관 책임자 즈드라보미슬로프(К.Я. Здравомыслов), 구 궁정부 총괄 고문서계원 로자노프(С.А. Розанов), 페트로그라드 대학 역사학부 교수인 플라토노프(С.Ф. Платонов), 그리고 라드 동맹 3차 회의에서 동맹의 대표자로 선출된 역사가이자 학술원 정회원인 랍포-다닐롭스키(А.С. Лавро-Данилевский) 등이 그 조직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sup>14)</sup> 라드 동맹은 1918년 4월 2일에 소련 최초의 기록보존업무 관련 당국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기록관리 중앙위원회'(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управлению архивами)가 창설될 때까지 1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 존속하면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에 놓여 있던 러시아 기록관리 업무의 거의 전 부문을 총괄하다시피 하는 결코 쉽지 않은 과제를 담당하였다.

당장 제기된 과제는 조직의 정비였다. 당초 페트로그라드에서 결성된 '동맹'에 지방의 주 기록보존소 대표들이 참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지방 활동가들의 관심은 실질적으로 방치 상태에 있었던 지방의 기록들을 지켜내기 위해서도 긴요한 일이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 지부들이 생겨나게 되어 1917년 6월 16일에 정관을 바꾸어야 했다. 이때 '동맹'은 아래의 5가지를 자신들의 주요한 사명으로 천명하였다.

- ① 기록보존과 관리 업무의 올바른 토대를 마련한다.
- ② 기록관리 활동가들의 직업적 이해를 보호한다.
- ③ 기록관리학의 업적들을 출간한다.
- ④ 긴급 상황에서 기록관 자료들의 보존을 위한 필수적 조치들을 마련한다.
- ⑤ 당국, 사회, 학술기관 및 개인과 라드 동맹 사이의 연락 업무를 담당한다.

14) 이하 라드 동맹의 활동은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23-25를 참조하였다.

물론 이상의 활동은 당국으로부터 지원을 기대할 수 없었다. '라드 동맹'의 지도자들은 동맹 활동의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원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깨닫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회원은 연 5 루블의 회비를 납부할 것과, 입회시 100루블의 가입비를 내도록 하였다. 이 외에도 동맹이 출간하는 출판물의 수입과 각종 기부금을 활동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하였다.

라드 동맹의 적극적인 자세는 당국의 호응을 불러 일으켰다. 6월 22일에 임시정부는 2월 혁명의 주요 기록들을 '동맹'이 주도적으로 모아보도록 위임하였다. 당국의 요청은 '동맹'에게 자신들의 최고 관심사안인 기록의 훼손과 분실을 방지하기에 적절한 조치들을 취해 주도록 당국에 요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즉, 각 지역과 부처에서 허락 없는 기록 은폐나 폐기를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조치가 라드 동맹의 첫 번째 요구 사항이 되었다. 또 하나는 전체 기록보존소 내의 기록물에 대한 집중 관리를 규정하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의로운 정리와 기술을 금지하라는 요구였다. 통일된 원칙이 없는 상태로 개별 기록관에서 기존 기록들을 각각의 방식으로 정리할 경우 기록 폰드의 질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결국 기록이 갖는 학술적 문화적 가치가 손상될 염려가 있음을 '동맹'의 구성원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당국에 라드 동맹이 올린 실무적 차원의 요구는 학술-방법론적 모색과 관련된 '동맹'의 적극적 활동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조직-실무적 업무와 학술 연구는 이론적 검토와 그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실제적 목표들과 건의안들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격상 서로 분리될 수 없었다. '동맹'의 학술적 활동의 성과는 다음과 같은 예들에서 발견된다. 기록보존소를 통한 역사-문화적 가치의 전승에 비중을 두고 있었던 라드 동맹의 구성원들은 프랑스의 예를 따라 교육부가 기록보존업무의 주무부서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동맹'을 협조 조직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 '동맹'의 구성원인 레베데프와 초기부터 동맹활동에 적극 참여했던 아키비스트 크나제프(Г.А. Князев)는 1917년 4월과 5월 사이에 기록물 대부분에 규정되어 있는 비밀등급의 조정 문제와 연구자들의 기록관 출입과 활용의 허용 정도를 모색하였다. 사실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되는 위의 사안들은 현재까지도 기록학계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당시에 해결을 보지 못하였다. 다만 두 아키비스트는 전체정치하의 비밀문서들을 공공비밀기록, 개인비밀기록, 비밀성 자료가 포함된 개인수집자료 등으로 구분하여 향후 탄력적인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보다 논란이 된 사안은 기록관에 대한 연구자의 이용이었다. 구체제가 무너진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시

점에서 아무런 제한 없이 기록을 이용하게 할 경우, 많은 이들이 반대했던 것처럼, 싸구려 센세이션을 노린 폭로와 민감한 사실들로 인한 공공 이익의 침해 우려가 있었다. 하지만 '동맹'은 학문연구자들이 가져올 잠재적 유익을 강조하면서 타협안으로서 이용 시에 진지한 연구자임을 보여주는 기관의 서한을 요구하기로 하자는데 합의하였다.<sup>15)</sup>

하지만 라드 동맹이 자신들의 정책적 제안들과 연구 결과들을 실현해줄도록 요구하기에 임시정부의 기반은 너무나 허약했다. 1917년 8월 말 코르닐로프 사건이 터지면서 정국이 급격히 혼란해지고, 권력의 중심이 볼셰비키 쪽으로 기울었던 것이다. 9월에 소집이 예정되어 있었던 라드 동맹 총회도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12월로 연기되어야 했다. 동맹은 사회 전반의 불안정과 마침 리가 근처까지 진격했던 독일군의 위협,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강제수단의 부재라는 불리한 여건에서 기록의 산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라드 동맹의 의장이었던 랍포-다닐롭스키도 '페트로그라드의 주요 기록관들과 학문 기관들의 기록관을 이전시키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겨졌다. 적에게 넘기느니 차라리 이동시의 손실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었다.<sup>16)</sup> 당시에 이미 사실상 도시의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볼셰비키 중앙당(군사혁명위원회)은 10월 10일에 라드 동맹에 '페트로그라드로부터 주요 기록물들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소개시키라'는 지시를 내리게 되었다. 프레스냐코프는 당시의 긴박한 상황을, "아무런 계획도 없고 기술적 여건도 고려하지 않은 채로 ... 가치 있고 중요한 기록물 파일들을 ... 급하게 대충 싸매어서는 ... 쪽배로 강을 통해 실어 날랐다"고 전하고 있다.<sup>17)</sup> 볼셰비키 중앙당으로부터 소개 명령이 나온 지 정확히 보름 후인 10월 25일에 권력이 볼셰비키의 수중으로 넘어갔다.

### 3. 1918년 6월 법령의 탄생과 아키비스트: 1917년 11월-1920년

#### 3.1 가중된 어려움

주요 기록의 소개가 본격화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다시 정권이 바뀌자 2월 혁명 직후의 상황이 재현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었다. 사실 1920년까지도 볼셰비키 권력 장악은 그리

15) 이상의 학문적 연구 활동에 대한 논의는 라드 동맹의 6차 회의에서 격렬한 논쟁과 함께 진행되었다.

16) Автократов В.Н. 윗글. №. 3. с. 16.

17) Пресняков А.Е. 윗글. с. 207.

확고한 상태가 아니어서 현실적으로 새 정권이 기록을 보호해 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오히려 새로운 정권의 대두는 라드 동맹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아키비스트들에게 심각한 고민을 더해주었다. 프레스냐코프는 이 시기에 대해 '무정부 상태에서' 같 등에는 '계급적 성격까지 더해졌다'고 평가했다.<sup>18)</sup> 아키비스트들은 새로운 정치권력의 지배 아래에서 이전의 체제가 만들어낸 문화와 그 유산에 대해 반대하든가 방관하든가의 두 가지 이외에 다른 선택이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지방과 수도를 막론하고 기록관 직원들의 임금 체불이 지속되면서 많은 전문 인력들이 자리를 비우거나 혹은 자신이 관리하는 기록을 들고 나가는 경우가 나타났다. 기록관의 자재나 공간이 사적인 목적에 전용되는 사례도 빈번했다.<sup>19)</sup> 혁명 전투의 와중에 파괴된 일부 기록관을 비롯해 많은 기록보존소들이 감독이나 관리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었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대가 기록관들을 접수한 사례도 없지 않았으나 이런 경우 군에 의한 자의적인 시설 용도변경이나 기록파괴에 대한 항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sup>20)</sup>

상당수 볼셰비키들이 '이제 미래를 향해 열린사회를 건설하려는 마당에 과거를 회상할 필요가 무엇인가'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옛 유산들에 대한 저들의 태도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모스크바 크레믈린에 대한 발포 명령 이후 10월 28일-11월 3일까지 크레믈린 내의 피해상황을 조사한 В.О. 세델니코프 Седельников에 따르면 크레믈린 내의 궁정부 기록관은 '문이 뜯겨나갔고, 모든 방들에는 어리석고도 미개한 방식으로 건드려진 흔적이 있다... 특히 18세기 문서들이 많은 손상을 입었다... 그간 반세기 이상의 정리 작업과 노력의 결과들이 근본까지 흐트러졌고 망가졌다'고 썼다.<sup>21)</sup> 모든 기록관들이 심각한 손상을 입은 것은 아니었으나 2월 혁명 이후보다 더 심한 기록물의 손상을 염려할 만한 근거가 되기에는 충분했다.

기록에 대한 위해 이상으로 아키비스트들을 긴장으로 몰아넣은 충격은 볼셰비키에 의한 대규모 기록보존소들의 접수 시도였다. 1917년 11월 이후 새 정권은 인민위원을 파견하여 주요 기관의 접수에 나섰다. 그 중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날까지 확인되고 있는데, 그들은

18) Реформ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етрограде (Пресняков А.Е.)// ГАРФ. ф. 5325. Оп. 9. Д. 480. Л. 19.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34에서 재인용.

19) Пресняков А.Е. 윗글, с. 208.

20) 신성종무원 기록보존소와 같은 대규모 기록보존기관을 항공 군사학교에 넘길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으나 소규모 기록보존소들이 처한 위험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40.

21) Седельников В.О. 윗글, с. 449-450.

전설적인 볼셰비키 항해사이자 수병인 마르킨(Н.Г. Маркин)과 잘킨트(И.А. Залкинд)였다. 그런데 당대에 함께 활동했던 이들의 회고에 따르면, 마르킨은 '글도 잘 모르는 인물'이었고, 잘킨트는 '왜 문서를 기록관으로 보내야 하는지조차 짐작하지 못할' 만큼 기록보존 관련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이었다고 한다.<sup>22)</sup> 이들과 같은 볼셰비키 행동대원들의 눈에 구정권 아래에서 활동했던 아키비스트들은 '짜리정의 관리'로 여겨졌다.<sup>23)</sup>

### 3.2 권력과 아키비스트

전반적인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기록관리종사자동맹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목전에서 자행되는 역사적 보물들에 대한 파괴를 방관하고 있을 수 없었다. 1918년 1월 28일 라드 동맹은 임시정부의 붕괴로 소집되지 못했던 회합을 재개하기로 결정하고, 임시정부에 요청했던 바 학문 활동과 학술기관의 자치와, 전국의 아키비스트들에 대해 복귀를 호소하기로 결의하였다. 이틀 뒤에 열린 차기 회합에서는 당시 인민교육위원부를 이끌고 있던 루나차르스키와 협의하여 당국과의 협의를 추진하기로 계획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3월로 예정된 교육인민위원부의장과의 만남은 '정치적 사건들'을 이유로 무산되고 말았다.<sup>24)</sup>

1918년 봄이 되었을 때 신생 소비에트 정권은 몇 가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었다. 그 하나가 노골화되는 백군운동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대표인민위원회(소브나르콤)는 페트로그라드의 주요 기록보존소 자료들을 새로운 수도로 옮기도록 하는 조치를 결정하고 그 책임자로 라자노프(Д.Б. Рязанов)를 임명하여 그에게 전권을 부여하였다.

볼셰비키로서는 드물게 박식하고, 예절바르며 신사적 이미지를 가진 인물로 평가되는<sup>25)</sup>

22) Лопухин В.Б. После 25 Октября // *Минувшее. Исторический альманах*. Т. 1. М., 1990. с. 25-26, 70, 73-74.

23) 당시 자본가, 지주 및 전제정의 관리는 모두 인민의 적으로 분류되었다.

24) 아마도 3월에 체결된 독일과의 브레스트 협약과 모스크바로의 천도 등이 주된 이유였을 것으로 보인다. Автократов В.Н. *Вител*. No. 3. с. 23.

25) Ан-ский С. После переворота 25 октября 1917 г. // *Архив русской революции*: В 22 т. Т. 7-8. М., 1991. с. 51; Готье Ю.В. Мои заметки // *Вопросы истории*. 1991. No. 11. с. 158. 라자노프는 다수의 마르크스와 엥겔스 원작들이 소련에 남게 되는데 결정적인 공헌이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세기 전환기에 개인적으로 마르크스 엥겔스의 수고본들이 퍼져나간 경위를 해명하여 여러 곳에서 그것을 찾아내었으며, 그것들의 중앙보존을 위해 노력하였다. Хорхордина Г. *앞의 책*, с. 47 참조.

라자노프의 출현은 라드 동맹에 있어 일단 새로운 기회로 여겨졌다. 1918년 3월 26일 라자노프에 대한 사전 '정찰임무'를 위해 면담을 하러 갔던 골리친 공은 "그는 문화인으로 보이며,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는 기록보존소의 회복을 자신의 목표로 여기고 있다"면서 "라드 동맹 회합에서 자신의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갖고 싶어 한다"고 레베데프에게 전하고 있다.<sup>26)</sup> 라드 동맹은 이를 새 정권의 협력에 대한 요청으로 조심스럽게 해석했던 것이었다.

라자노프가 희망한대로 1918년 3월 27일 목요일에 소비에트 정권과 라드 동맹 대표들 간의 최초의 공식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다. 라드 동맹의 의장 랍포-다닐롭스키는 라자노프가 도착하기 몇 분 전에 골리친으로부터 그와의 사전 만남에 대해 보고를 받고 그간 라드 동맹의 활동에 대한 정권 측으로부터의 인정과, 기록관리 사업의 개혁을 위한 지원 및 기록자료 보존 정책 등을 촉구할 계획을 세웠다.<sup>27)</sup>

하지만 회의가 열리자 상황은 라드 동맹의 주도권을 확증 받으려던 랍포-다닐롭스키의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첫 회합의 연설을 통해 라자노프는 자신이 준비한 매력적인 제안들을 신속하게 발표하여 라드 동맹 회원 다수의 지지를 얻는데 성공하였던 것이다. 그는 아키비스트들이 인민위원의 파견에 반감을 갖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며 자신의 중요한 임무는 1차적으로 당으로부터 위임받은 귀중한 기록의 소개에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 러시아에 기록관 업무를 위한 감독기관을 설립함으로써 이 부문 종사자 전체의 가장 생산적인 활동을 창출할 여건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던 것이다. 연설을 마치면서 그는 '죽어가는 기록관들을 구해내기 위해 필수적인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에게 말씀해 달라'는 부탁까지 잊지 않았다.<sup>28)</sup>

이후 라드 동맹은 라자노프의 연설에서 제안된 기록관 감독 중앙조직의 구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한 후 동맹의 대표 5인을 평의회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sup>29)</sup> 4월 2일에 소집된 대표자협의회는 라드 동맹의 대표 5인과 라자노프 이외에 도서관 대표로 출판국장 벤게로프(С.А. Венгеров), 국립 페트로그라드 대학 대표로 플라토노프, 그리고 고고학위원회 대표인 비츠코프(И.А. Бычков), 박물관 대표인 드루쥬닌(В.Г. Дружинин) 등 모두 10명이 참석하였으

26)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48 재인용.

27)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48.

28)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49.

29) 이날 회의에서 동맹의 의장 랍포-다닐롭스키, 골리친 공, 레베데프, 브리노프, 즈드라보미슬로프가 대표로 선출되었다.

며, 여기서 '기록관 관리 중앙협의회' (ЦКУА: Центральный комитет по управлению архивам и, 이하 '중앙협의회')라는 명칭을 채택하였다.<sup>30)</sup> 여기서 보듯이 최초의 당국-전문가 협의체는 기록과 도서, 박물관자료에 이르는 문화적 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지향하고 있었다.

'중앙협의회'는 4월 2일의 회의에서 라자노프를 의장으로 선출하고, 각 구성원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의논하는 등 조직 문제를 해결한 후 본격적으로 긴급한 현안 문제들에 대한 논의에 돌입하였다. 첫 모임에서 위원들은 '중앙협의회'의 출범을 모든 기관에 회람으로 통고할 것과, 노동자, 병사 지역 소비에트에 기록관 관련 업무에 간섭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한편으로 지방 기록보존소들에 협의회 관련 소식을 전해주도록 약속을 받았다. 이후 실제적인 급선무로 가장 먼저 의논된 사안은 멸절될 위기에 놓인 기록의 보존과 이른 위한 법안의 마련이었다. 회의에서는 '혁명의 과정에서 여러 기록보존소들로부터 탈취되어 고서점이나 고물상 등에 위치하고 있는 책이나 문서들과 관련하여 이를 매매하는 것이 범죄행위임을 공포하고, 그것을 되돌려 주는 경우 구매자가 산값으로 보상해주자'는 제안이 수용되었다.

이어 가장 날카로운 논쟁의 대상이 된 사안, 즉 기록관의 중앙집중화와 그 관리에 관한 계획이 제기되었다. 라자노프는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서 혁명 전에 존재했던 기록관리기관을 크게 부처 기록관들과 기타 기록관으로 나눈 후 현재 문을 닫고 운영되지 않는 기록관들을 중앙집중화하고 그 관리를 교육인민위원회에 넘기자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중앙집중화의 문제는 향후 기록보존 관리 주체를 바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서 향후 기록관들의 자치와 운영에 직결된 것이었다. '중앙협의회' 구성원들은 부처의 직접적 관리 밖에 위치하게 될 기록관들의 경우 특히 재정문제와 관련된 운영상의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염려를 표하면서 아직 완전히 권한을 넘길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을 내세웠다. 기록관의 중앙집중화를 속히 이루고자 원했던 라자노프도 '중앙협의회'의 권한이 커져 관련 문제에 대한 조정의 가능성이 생기는 조건에서 교육인민위원회가 기록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선에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당시까지 여전히 그의 역할과 지위가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이 걸렸다고 여겨진다.

4월 9일의 회의에서 라자노프는 기록의 관리에 있어 도서와 도서관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고 협의회 구성원 중에 관련된 인사들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기록관 관리 중앙협의회'를 '기록관과 도서관 관리 중앙협의회'로 바꾸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위원으로 참여한

30) '중앙협의회'의 구성과 첫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Автократов В.Н. 윗글. No. 4. с. 4-8을 참조하였다.

아키비스트들은 학문적 측면이나 실무 운영이란 관점에서 양자는 '정보의 덩이 자체가 서로 다른 특성과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분류와 정보 이용의 조직이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여 라자노프가 자신의 권한 확대를 모색하고 있음에 대한 못마땅함을 표현하였다. 하지만 당시 도서관 역시 기록보존소들과 유사하게 곤란한 형편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과, 도서관의 수고 자료들에 대한 전문적 보존 역시 시급함을 잘 이해했던 위원들로서는 러시아내에서 도서관과 기록관의 총체적 관리를 위한 유일한 공식기관의 대표로 라자노프를 추대하는 일에 협력하지 않을 수 없었다.

4월 16일 새로운 조직의 구성을 위한 임원 선정 작업과 더불어 '중앙협의회'가 페트로그라드의 내무인민위원부 소속 기관이 되기로 결정되자, 랍포-다닐롭스키는 라드 동맹의 존재 여지가 사라졌다는 판단 아래 '동맹'의 의장직을 사임하였다. 비록 그를 이어 플라토노프가 대표직을 맡기는 했지만, 랍포-다닐롭스키의 사임과 끝나는 그의 사망(1919년 5월)으로 사실상 라드 동맹의 역사는 마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기록관 업무의 개혁 작업은 라자노프의 주도 아래 플라토노프와 그를 지지했던 라드 동맹의 아키비스트들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으며 4월 중반 이후부터 5월 말까지 맹렬한 속도로 전개되어 나갔던 것이다.

### 3.3 1918년 6월 1일 법령이 준비되다.

불행하게도 4-5월 사이의 '중앙협의회'의 활동에 관한 회의록이 남아 있지 않아 전반부와 같이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일은 불가능하다.<sup>31)</sup>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 '중앙협의회'는 라드 동맹 시기부터 작업해 왔던 기록보존 업무 개혁의 이론적 원리와 학술적 아이디어를 하나로 통합하여 법적인 기초를 마련하는 작업과, 손상을 입은 기록물의 보존, 등록, 판명 등의 실무적 업무들을 진행해 나갔다.

특히 사라질 위협에 놓인 기록들을 되돌리기 위한 노력은 주목할 만 하다. '중앙협의회'는 프레스냐코프를 책임자로 하는 전담기구(조사처)를 설치하여 사라토프, 사마라, 시베리아까지 오가면서 지역 아키비스트들의 협력을 받아 손상된 임시정부 기록들을 되돌리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기록들은 원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분산되고

31) 하르호르디나는 각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회의 자료들을 보존했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협의회'의 논의에 혁신적이고 진보적인 내용을 담아내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갈등의 요소를 없애기 위한 목적 때문으로 보았다.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54-55.

뒤섞이거나 파일의 덩어리가 떨어져나가 원질서의 회복이 긴급하였다. 아키비스트들은 문서 자체를 일일이 검토하면서 일단 업무가 실행된 곳의 인적 구성을 따라 기록물의 소속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일을 진행하였다. 글자체를 보거나 내용으로, 그리고 문서 자체에 남아 있는 다양한 역사적 흔적들을 더듬는 다양한 방법들도 적용되었다. 동일한 방식으로 원로원 기록의 정리 작업이 진행되었는데, 원로원은 제정 러시아의 가장 큰 기록관을 가지고 있었던 기관이었지만 혁명 중에 건물이 완전히 방치됨으로써 손망된 자료들이 많았다. 프레스나코프는 자신과 친밀했던 전직 원로원 의원과 법률가들을 동원하여 기록의 판정과 분류에 활용하고, 임시정부 기록을 다루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조직체계에 따른 정리 방식을 고수하였다.<sup>32)</sup>

기록의 질서를 부여하고 낱장 기록들 간의 연관성을 정의하여 분류하고 그 위치를 판정해나가는 '중앙협의회' 조사처의 활동 과정은 필연적으로 제정 러시아 및 임시정부의 조직 기반과 기록보존 조직의 효율성에 대한 탐구의 과정을 동반하였다. 조직 분석 작업은 구시대의 관리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아 아키비스트들이 진행하였다. 이러한 개별 조직들은 하나의 기록 폰드로 되살아났다. 역사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유기체적 성격에 따라 기록물 역시 부처별 연원을 중심으로 기록 폰드 안에 통합되었다. 말할 것도 없이 이러한 역사적 접근 원칙과 내부의 논리적 접근의 원칙이 이후 구성된 국립 기록 폰드의 근간을 형성하게 되었다. 즉 기록물 접근의 역사적, 논리적 원칙의 결합을 통해 분산된 부처 기록관의 기록군들을 재구성하고, 이를 묶는 단일한 국가 기록 폰드를 조직할 수 있는 재조직의 방안이 구체화되었던 것이다.

기록보존소와 그 관련업무를 중앙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문제는 오래 전부터 아키비스트들의 관심사안이었던 만큼 관련 법안을 위한 초안도 일찍 마련되었다. 1918년 4월 26일에 라자노프는 '기록관 중앙 관리국의 조직에 대한' 보고서(Об организации Центр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Архивами)를 레닌과 스탈린, 스페르들로프 등 당 최고위원 24인이 참석한 대표인민위원회에 제출하였다.<sup>33)</sup> 이날 대표인민위원회는 중앙관리청 조직의 추진과 함께 이 일을 추진할 '중앙협의회'를 위한 연 예산 20만 루블도 배정하도록 결정함으로써 '중앙협의회'를 관

32) Реформ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етрограде (Пресняков А.Е.)// ГАРФ. Ф. 5325. Оп. 9. Д. 480. Л. 21-22. Пшеничный А.П. О подготовке декрета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СФСР" // Советские архивы. 1987. №. 6. с. 16-24.5-57.

33) 이 보고서는 교육인민위원회 부의장이자 역사가였던 포크롭스키(М.Н. Покровский)에 의해 낭독되었다.

런 업무에 있어 전국적인 정부기관으로 공식화해주었다.<sup>34)</sup> 이로써 내부적으로 검토해왔던 법안의 최종안을 마련하는 일에 가속이 붙게 되었다.

최종적인 법안의 마련은 5명의 아키비스트와 도서관 관계자 2인(국립 공공도서관장 아브라모비치 Д.И. Абрамович와 출판국장 벤게로프)이 참여하고 있었으며, 만약을 위하여 기록 보존소만을 위한 법안 초안과 도서관까지 포괄하는 초안 등 두 가지 안이 검토되었다. 그런데 5월 8일에 두 번째 안을 검토하던 중앙협의회 회의에서 도서관 대표자들은 도서관 조직의 자치가 침해될 우려 때문에 자신들은 기록보존 관리청과의 협력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sup>35)</sup> 논의 끝에 '중앙협의회'는 법안에서 도서관학 관련 업무 부문을 제외하되 도서관에 보존되고 있는 아카이브와 고서 폰드 만을 포괄하는 '기록관리 사업 총국에 관한 법안'(Положение о Главном управлении архивным делом)을 상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초안을 마련함에 있어 외국의 사례들이 참조되었다. 라트 동맹 회원들은 이탈리아와 서유럽 각국의 제도에 대한 번역과 출판을 진행하고 있었다. 특히 프랑스의 사례는 러시아 아키비스트들의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혁명 이후 프랑스의 기록관리 제도에 반영된 국가 주도의 공공 기록관리 제도의 설립, 과거의 기록 유산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 및 일반 사회에 대한 기록자료 접근과 공개의 원칙 등이 신정권에서 이해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러한 영향을 반영하여 마련된 초안은 기록보존 사업 최고관리청의 주요 과제를 기록의 등록과 보존에 두었고, 그 관할 범위를 국립 기록 폰드 및 관련된 학술 고서와 사회 기관의 기록들로 규정하였으며, 기록보존소의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강조하였다. 이로써 법안 통과와 확정 의 과제는 '중앙협의회' 의장 라자노프에게로 넘어갔다.

5월 한 달 동안 법안의 통과를 위한 과정들이 진행되었다. 사실 고위 당국자들 사이에서 법안의 이론적 내용에 학문적 이의를 제기할만한 인물은 없었다. 최고위권에서 법안 초안에 담긴 이론이나 방법론에 대한 특별한 의미나 관심을 부여하지 않았음은 법안의 검토안이 출판되지 않았던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실질적인 문제는 최종결정권자들의 무관심, 그리고 법안을 실현해 나갈 업무종사자들의 확보에 있었다. 5월 한 달 동안 최고 인민위원들 사이의 정치적 갈등까지 반영된 곤란한 상황들이 연출되는 난관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결국

34) Шмидт С.О. Вступительное слово (к Тихомировским чтениям 1979 г.) // Археографический ежегодник за 1978 г. М., 1979. с. 122-123.

35) Автократов В.Н. 윗글. №. 4. с. 9-11; Пшеничный А.П. О подготовке декрета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СФСР" // Советские архивы. 1987. №. 6. с. 16-24.

법안 초안은 5월 말의 수차례에 걸린 조정을 거쳐 인민위원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6월 1일자로 레닌의 서명을 받아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기록관리 업무의 재조직 및 중앙화에 관한 법령'(Декрет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СФСР)으로 공포되었다.

### 3.4 법안: 소련 기록학의 권리선언?

12개조로 구성된 6월 1일 '법령'은 제정러시아 시기의 모든 기록보존 및 관리 법규의 폐지, 통일된 국가기록 폰드의 설립, 혁명 전 각 정부기관의 모든 기록에 대한 사무의 통일적 관장과 제도의 제정, 기록관리 사업 총국의 교육인민위원부 산하 독립 기관 유지 및 총국장으로 교육인민위원부 부의장 임명 규정, 기록관리 사업 총국장의 당에 대한 직접 보고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법안은 기록관리 사업 총국의 서면 비준을 거치지 않는 임의의 기록 폐기 금지와 위법자에 대한 의법처리를 명시하였다. 법안에 대해 상당수 지식인들은 드디어 고대했던 기록관리 개혁의 법적 기초가 놓였다고 환영을 표시하였다. 고대사 전문가인 베네셰비치(В.Н. Бенешевич)는 '법령'을 '기록학의 권리선언'이라고 극찬하기도 하였다.<sup>36)</sup>

하지만 통일된 국가기록 폰드의 설립을 통해 시대의 활동에 대한 기억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고 연구되어 교훈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당초의 희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실현이 매우 어려운 꿈이었음이 드러났다.<sup>37)</sup> 원래의 이상은 전국적으로 각 지역의 중심에 기록관의 개혁과 그 방법론적 적용을 주도할 중심들을 전국적으로 만들고 기록 관리 체제와 용어의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두 수도에서는 중앙 부처 기록보존소 자료들에 대한 일관된 기록 폰드를 구성하면서 산재되었던 기록들을 모아 원질서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수행하며, 동시에 예전의 시립 기록관이나 사설 기록관들을 관리하게 한다는 것이다. 동일하게 지방의 경우에는 주 수도에 중앙과 관련된 기록을 집중시키면서 동일한 국가 기록 폰드의 구성 방식에 따라 자료를 정리하고, 지역 기록보존소나 지방의 사설 기록보존소들은 자체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36)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67.

37) 프레스냐코프도 통일된 국가 기록 폰드의 이상을 실현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고 인정하였다. Пресняков А.Е. Реформ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 *Рус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1918. Кн. 5. с. 225.

그러나 당시에 그 이상은 완전히 이해되지도 못했으며, 실제로 실현하는데 몇 가지 현실적인 난관들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폐지된 부처 기록관들(혹은 역사 기록관)은 단지 형식적으로만 통합된 국가기록 폰드의 지부로 이름을 바꾸었을 뿐 자신들의 기록 그룹 구성방식을 계속 유지하였다. 통일된 기록 폰드를 구성한다는 이상은 두 수도 체제를 유지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그 자체로 갈등의 요소가 없지 않았다. 소비에트 정부 하에서도 모스크바와 페트로그라드는 공공연하게 주도권 싸움을 벌였다.<sup>38)</sup> 이제껏 기록관리 업무의 논의를 주도하였던 페트로그라드의 아키비스트들은 법령의 발효 후에 라자노프가 모스크바에 머물며 자신들을 계서제적 질서 체계에 따라 모스크바의 지부 조직으로 다루려는 듯한 태도에 못마땅함을 표시하였다.<sup>39)</sup>

지방의 경우는 중앙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관계로 중앙으로 기록 폰드를 통합한다는 회람과 지시 자체를 받지 못한 곳이 많았다. 모스크바에서는 6월부터 진행된 군 기록자료의 정리에 대해 해당 기관이 군대 관련 기록은 '집중화의 대상이 아님을 즉시 명시하라'고 요구하며 기록관리 사업 총국에 기록물을 넘기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사태도 나타났다.<sup>40)</sup> 지방으로부터는 허락 없는 기록 파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고들이 계속 올라왔다. 내전의 본격화와 함께 주택과 종이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도 기록 손상의 주요인이 되었다. 비록 당국이 1919년 4월에 '폐기에 관한 특별 감시령과 기록관리 사업 총국의 승인 없는 폐기의 일절 금지령'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실제로 적발을 한 경우라도 감독자들은 중앙에 대한 불신이 담긴 편찬이나 듣기 일쑤였지 실질적인 처벌을 행할 수 없었다.<sup>41)</sup>

전국적 규모로 기록관리 업무의 중앙화를 실현하고자 레닌이 직접 서명하여 발표된 6월 1일의 '법령'조차 지역과 상황에 따라 수용되지 않거나 오해되었으며, 동시에 지역과 개별 기관의 고수하는 입장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38) 당시 페트로그라드 볼셰비키 최고지도자였던 지노비예프는 '모스크바가 우리에게 명령하지는 못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69.

39) 1918년 7월에 기록관리 사업 총국 페트로그라드 지부 대표로 선발된 플라토노프와 그 위원들은 스스로를 '페트로그라드의 기록관리 사업총국 위원'이라고 불렀다.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74.

40) Хорхордина Т. 앞의 책, с. 72.

41) 대표적인 말은 '당신 일 아니니 상관하지 말라'였다. 어떤 경우는 인터네셔널리즘을 들먹이며 '국가 기록 폰드가 당의 이념과 배치된다'는 식의 역공도 있었다. Съезд губернских уполномоченных Главархива. М., 1919. с. 1-5.

#### 4. 맺음말

1918년 6월 1일 법령은 제정러시아와 임시정부 시기에 목도하지 못했던 기록관리 업무의 법적 기초를 놓은 중요한 계기로서 역사적 의미를 부여받아 왔다. 레닌의 법령은 근대적 기록관리의 출발에 있어 프랑스 혁명이 차지하는 위치를 사회주의적 기록관리학의 출발과 관련하여 러시아 혁명에도 부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의 출발이 된다.

본 연구는 동 법령의 역사적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1917년 이후 아키비스트들의 활동이 집약된 러시아 기록학계의 시대적 기념물이라는 점을 더욱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1917년 10월에 혁명이 성공하고 채 1년이 되지 못한 시점에서 대내외적 어려움 속에서도 당에 의해 기록관리의 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사실만 강조된다면 제정러시아 정권의 무능력과 '레닌과 당의 탁월한 영도력'이, 또 거대한 관료주의적 조직의 폐해로 연기된 아카이브 개혁에 대해 혁명 이후의 강력한 조치들의 불가피성이 연상될 수 있다. 반면에 1918년 법령을 사실상 제정러시아 시기에 경험을 축적했고, 두 혁명의 사이에서 어려운 결단들을 계속했던 개별 기록보존 전문가들의 두드러진 활동의 결과로 인식할 경우 인식의 강조점은 당대의 기록학이 만난 시대적 과제와 현실적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모색된 구체적인 대안과 그 의미 및 기술적인 성과들로 옮겨가게 된다.

라드 동맹을 대표로하는 소비에트 정권 성립 초기 러시아 아키비스트들의 자발적 움직임은 대단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다. 저들은 소수였으며 이념적으로 일치된 견해를 표명하지도 않았지만, 역사적 유산의 손상을 막고 더 나아가 안정적으로 기록이 축적되며 보존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첩하고도 총체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이 해야 할 일에 비해 존재할 수 있는 기간은 너무 짧았고, 해결해야 할 도전은 너무 많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권력과 이상간의 틈바구니에서 갈등과 시련을 겪으며 탄생시킨 6월 1일의 법령도 그 자체로 아키비스트들이 희망했던 바 기록관리 사업의 이상을 실현하고 제도적인 정착을 보장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정권의 정치적 안정을 비롯하여, 법령의 이상을 실행해나갈 새로운 인력의 육성, 기록관리 업무 개혁을 위한 세부 규정의 제정 등 앞으로 많은 단계가 필요했다. 1920년 9월에 역사가 출신인 포크롭스키가 라자노프를 대신하여 새로운 기록관리 업무 총국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1918년 법령의 목적을 현실화시킬 것인가의 과제가 그에게도 동일하게 제기되었다. 과

제는 동일했으나 새로운 노선의 선택은 더 이상 1918년 법령을 준비한 사람들의 몫이 아니었다.

### 〈참고문헌〉

- 방일권. 「러시아 기록물 분류체계의 발전」. 『기록학연구』 제 7호, 2003.
- 조호연. 「전환기의 러시아 기록보존소」. 『기록보존』 제 9호, 1996.
- 조호연. 「러시아의 기록보존제도」. 『역사비평』 36호, 1997.
- 호스킹. 김영석 역. 『소련사』. 흥성사, 1988.
- Автократов В.Н. Из истори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1917-1918 гг.) // *О течественные архивы*. 1993, №. 3. с. 9-34; №. 4. с. 3-27.
- Жуков Ю.М. Становление и деятельность советских органов охраны памятников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1917-1920 гг. М., 1989.
- Лопухин В.Б. После 25 Октября // *Минувшее. Исторический альманах*. Т. 1. М., 1990. с. 25-74.
- Максаков В.В. Архив революции и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XIX и XX вв. // *Архивное дело*. 1927. Вып. VIII.
- Пресняков А.Е. Реформ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оссии. // *Русский исторический журнал*. 1918. Кн. 5. с. 205-225.
- Пшеничный А.П. О подготовке декрета "О реорганизации и централизац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РСФСР" // *Советские архивы*. 1987, №. 6. с. 16-24.
- Самошенко В.Н. История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дореволюционной России. М., 1989.
- Седельников В.О. ЧК и архивы: Два эпизода из истори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первые годы Советской власти. // *Звенья. Исторический альманах*. Вып. 1. М., 1991. с. 439-450.
- Теория и практика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в СССР. М., Высшая школа, 1986.
- Хорхордина Т.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и архивы 1917-1980-е гг. М., 1994.